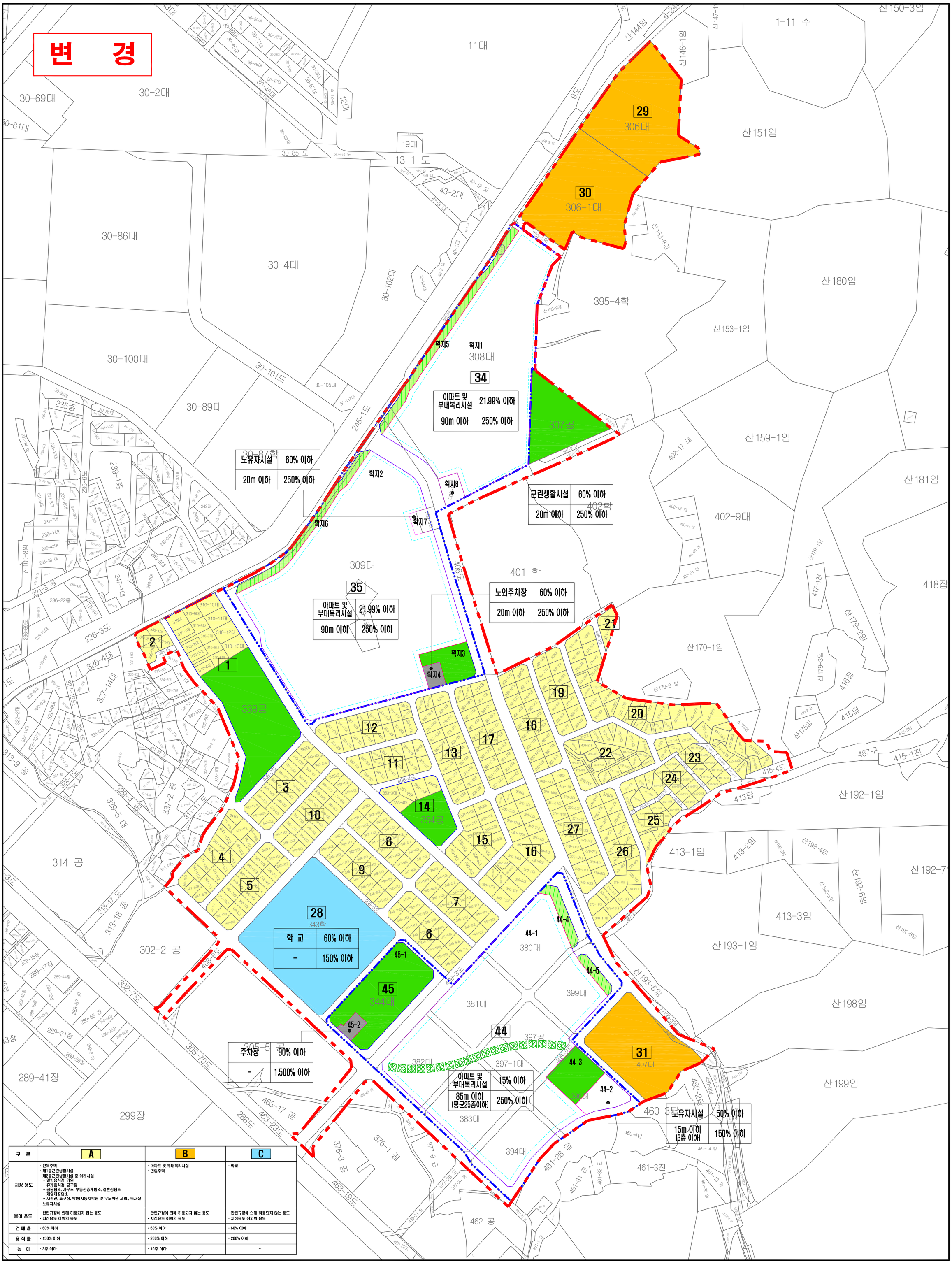

구 분	A	B	C
지정 용도	· 단독주택 · 제1종근린생활시설 ·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래시설 – 일반음식점, 기원 – 휴게음식점, 당구장 – 금융업소, 사무소, 부동산중개업소, 결혼상담소 – 게임제공업소 – 사진관, 표구점, 학원(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), 독서실 · 노유자시설	·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· 연립주택	· 학교
불허 용도	·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·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·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·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	· 관련규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용도 ·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
건 폐 율	· 60% 이하	· 60% 이하	· 60% 이하
용 적 률	· 150% 이하	· 200% 이하	· 200% 이하
높 이	· 3층 이하	· 10층 이하	-

도시관리계획(가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
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(변경)도

구 분	작 성 자	입안 및 결정권자	
		1차확인자	2차확인자
소 속	(주)유신	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	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
직 위	전 무	–	도시계획 담당
직 명	도시계획 기 술 사	지방시설 주사	지방시설 사무관
성 명	한 승 훈	천 준 홍	권 혁 철
확 인 인			

지 정 권 자	인 천 광 역 시 장
지 정 일 자	2014년 7월 일
고 시 년 도	2014년 7월 일
고 시 번 호	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- 호
작 성 자	인 천 광 역 시 장
작성년월일	2014년 7월 일
저작권소유 및 발행자	인 천 광 역 시 장

지구단위계획구역
정비구역
가구선
획지선
1 가구번호
-1 획지번호
건축한계선
공공보행통로

건축물용도	건 폐 율
높 이	용 적 율

N

Scale = 1 : 1,500

0m 10m 30m 50m 100m 250m